

#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1. 12. 2.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박왕규 의원 등 6명(정창근, 김화덕, 박정환, 이영빈, 홍복조)
- 발의일자: 2021. 11. 19.
- 회부일자: 2021. 11. 19.
- 상정 및 의결: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12. 2.)

### 2. 개정이유

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재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, 경비지원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문화재 보수자격 명시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함(안 제10조)
- 나. 향토문화재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)
- 다.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15조제1항)
- 라. 보수자격 등을 명시함(안 제15조의2)
- 마. 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하고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함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조, 제10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1. 11. 19. ~ 2021. 11. 30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조에 따라 문화재 멸실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이외에 달서구 향토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
-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향토의 역사·예술·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·무형의 자료,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그리고 향토문화, 토속,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·관리하고자 하는 것임.
- 특히 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서 지정된 향토문화재의 멸실·도난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, 안 제15조제1항에서 경비 지원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, 안 제15조의2에서 보수자격을 규정하는 등 관리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안 제15조제1항 본문에 경비 지원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제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, 안 제12조제2항은 안 제12조의2 제1항과 중복 되므로 삭제하고, “관리자”는 구청장이 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므로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일견 이유가 있지만, “소유자”는 향토문화재의 지정 등에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리 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, 안 제12조의2제1항 중 “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”을 “관리자 등”으로

하고, “관리자”는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므로 그 변경이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, “제12조제2항에 따른”을 “향토문화재가 멸실, 도난, 훼손, 보관장소, 소재지, 소유자 등”으로 하고,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15일 이내에”로 하여 신고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12조의2 수정안과 관련하여 향토문화재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·고시한 것을 말하므로, 이를 반영하여 제2조 각호를 제외한 부분 중 “해당하는 것”을 “해당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것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## **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## **7. 심사결과: 수정가결**

## **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**

#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출연월일 : 2021. 12. 2.  
제출자 : 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수정이유

- 가. 향토문화재를 구청장이 지정·고시한 것으로 함.
- 나. 향토문화재 경비지원을 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고자 함.
- 다. 향토문화재 변경사항의 신고의무자를 관리자로 하고, 변경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.

### 2. 수정내용

- 가. 제2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것을”을 “것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제9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한 것을”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수정함.
- 나. 안 제5조제3호 중 “보호 · 관리 · 수리”를 “보호 · 관리 · 수리 · 지원”으로 수정함.
- 다. 안 제12조제1항 중 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현행과 같이 하고,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.
- 라. 안 제12조의2제1항 중 “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”을 “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재가 멸실, 도난, 훼손, 보관장소, 소재지, 소유자 등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 15일 이내에”로 수정함.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것을”을 “것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제9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한 것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 안 제5조제3호 중 “보호 · 관리 · 수리”를 “보호 · 관리 · 수리 · 지원”으로 한다.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보존관리) 향토문화재를 보존 · 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· 관리하여야 한다.
2.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3.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.

안 제12조의2제1항 중 “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”을 “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재가 멸실, 도난, 훼손, 보관장소, 소재지, 소유자 등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 15일 이내에”로 한다.

## <수정안 조문 대비표>

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문화재(이하 "향토문화재"라 한다)라 함은 다음 각 호에 <u>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 2. <u>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향토문화재로서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적 등</u></p> <p>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 1. 2. (현행과 같음)  3. -----<u>관리·수리</u> --- 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보존관리) ① 향토문화재를 보존·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  1.~ 3. (개정안과 같음)  ② <u>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멸실, 도난, 훼손, 보관장소, 소재지, 소유자,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2조의2(변경신고) ①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문화재(이하 "향토문화재"라 한다)라 함은 다음 각 호에 <u>해당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 2. <u>구청장이 향토문화재로서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적 등</u></p> <p>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 1. 2. (현행과 같음)  3. -----<u>관리·수리·지원</u> --- 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보존관리) 향토문화재를 보존·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  1.~ 3. (개정안과 같음)  <u>&lt;삭제&gt;</u></p> <p>제12조의2(변경신고) ① 향토문화재의 <u>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재가 멸실, 도난, 훼손, 보관장소, 소재지, 소유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u>②③</u>	<u>②③ (개정안과 같음)</u>